

의안번호	2207766
의 퇴 인	윤호중 의원
회 답 일	2025. 2. 6.
추 계 번호	25F052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공익법인의 「공익목적투자」를 「직접공익목적사업」 대상에 포함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48조제2항 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한 과세가 액 불산입)	○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대상 확대 등 － 직접 공익목적사업 대상 확대: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출, 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 지분투자 및 대출,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‘공익목적투자’를 포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8조제2항 (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한 과세가 액 불산입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대상에 ‘공익목적투자’를 포함하게 되면 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-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
 - －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
 - －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
 - －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

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

-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

□ 그러나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대상에 ‘공익목적투자’를 포함함에 따른 세수효과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투자 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최근 3년간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현황을 살펴보면, 2021년 144조원(11,203개 공익법인), 2023년 175조원(11,727개 공익법인)으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최근 3년간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현황

(단위: 개, 조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법인수	11,203	11,557	11,727
공익목적사업 사업수익 금액	144	176	175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